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긴급)임시조치의 사유·내용 변경 및
사법경찰관에 대한 임시조치 청구권 부여 등 〉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627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혜 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4
1. 개정안의 내용	4
2. 유사·관련 법률안의 심사 현황	18
3. 응급조치의 범위 확대 등	21
4. (긴급)임시조치의 사유·내용 변경	23
5. 긴급임시조치 미이행 시 형사처벌 부과	29
6. 사법경찰관에 대한 고소권자 지정권 부여	32
7. 사법경찰관에 대한 임시조치 청구권 부여	34
8.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인정 및 보호사건 처리 허용	37
9. 보호명령사건에서 경찰서장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요청	41
10.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건명 등 출판·방송 제한	4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2025. 1. 17.
3. 회 부 일: 2025. 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의 성명과 결합된 아동학대범죄 관련 사건명 또는 법률명이 통용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해당 성명에 대한 편견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임시조치는 검사를 경유하여 법원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시조치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위협예방활동이므로 신속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경찰에서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아동학대 범죄 발생 이전이라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임시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긴급임시

조치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과태료 밖에 없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아동학대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경찰에서 수사 종결하는 사안이라도 아동학대 가해자 성행교정을 위해 직접 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도록 하여 아동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응급조치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서 ‘진행 중’을 삭제하고, ‘폭력행위 재발 시’라는 불명확한 요건을 생략함(안 제5조).

나.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다.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 중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임시조치의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8조의3 및 제29조제3항).

마. 긴급임시조치의 요건 중 가정폭력범죄의 ‘재발될 우려’를 ‘발생할 우려’로 수정하고, 긴급임시조치 사항에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사건 중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함(안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37조, 제40조제4항,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 및 제65조제3호).

사.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가정폭력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가정폭력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및 제66조).

아. 법원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검사 경유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2).

자.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

I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긴급)임시조치의 사유와 내용을 변경하고, 가정폭력범죄 사건 처리 절차에서 관계기관의 권한을 조정하는 한편,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출판·방송 제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의 요건에서 가정폭력범죄가 진행 중일 것을 삭제하고, (긴급)임시조치의 사유를 범죄의 ‘재발 우려’에서 ‘발생 우려’로 변경하며, 긴급임시조치의 내용에 유치장 유치를 추가하는 한편, (긴급)임시조치의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도입함(안 제5조 등).
- 사법경찰관에 대한 고소인 지정권 및 임시조치 청구권 등 부여(안 제6조 등),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인정 및 보호사건 처리 허용(안 제9조 등) 등으로 가정폭력범죄사건 관계기관 간의 권한 범위를 조정함.
- 피해자의 2차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사건명 등의 출판·방송 등을 금지함(안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 조치) <u>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u> 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 조치) <u>가정폭력범죄에</u>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u> 따라 임시조치를 <u>신청할</u> 수 있음을 통보	4. <u>제8조에</u> ----- ----- <u>청구할</u>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② (생략)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u>검사는</u>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 ----- -----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u> ----- -----.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u>사건을</u>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 ----- <u>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u> ----- ----- -----

시할 수 있다.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 발생할-----
-----피해자
나 그 법정대리인의-----
-제29조제1항 각 호의-----
-----.

② 제1항의 경우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요청
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
술할--.

<삭 제>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

<삭 제>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

-----발생할-----

-----제29
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및 제5호 중-----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
치의 청구) ① -----

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1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제9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송

-----.

② 사법경찰관은-----

-----.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가정보호사건의 송치)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
에 송치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송치 시의 가정폭력행위
자 처리)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송치결정이 있
는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를 구
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
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제
10조에 따른 관할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 광역시 및 「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
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군에서는 24
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군
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가정폭
력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

③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송치 시의 가정폭력행위
자 처리) ① -----

-----검
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제29
조에 따른 임시조치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5조(이송) ① (생략)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송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 ③ (생략)

<신설>

제27조(동행영장의 집행 등) ①
(생략)

②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1년
이상 동행영장을 집행하지 못
한 경우 사건을 관할 법원에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이송) ① (현행과 같음)

②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가정폭력범죄 관련 법률명 또
는 가정폭력범죄 사건명을 신
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
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제27조(동행영장의 집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
치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9조(임시조치) ①·② (생
략)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
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⑫ (생략)

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① (생략)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의 사유
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
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
다.

1. 2. (생략)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
우에는 이를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검사 또는 경
찰서 사법경찰관에게-----.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임시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및-----.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에 따라 경찰이 송치
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
원에 대응하는 경찰서의 사
법경찰관에게 송치

③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게-----.

③ 제1항의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

③ _____

실을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범
정대리인, 보조인, 피해자, 보
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에 통지
하여야 한다.

제46조(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
자가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
8호까지의 보호처분 결정을 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또
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
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2. (생략)

<신설>

제47조(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이 교정
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
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

-----사법경찰관, 가정폭
력행위자-----

-----.

제46조(보호처분의 취소) -----

-----사법경찰관, 피해
자-----

-----.

1. 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에 따라 경찰이 송치
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
원에 대응하는 경찰서의 사
법경찰관에게 송치

제47조(보호처분의 종료) -----

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제49조(항고) ① 제8조 또는 제2
9조에 따른 임시조치(연장 또
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의 보호처
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
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
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
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
당한 경우에는 검사, 가정폭력
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
인은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
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서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제37조에 따라 처분
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사법
경찰관, 피해자-----

-----.

제49조(항고) ① -----

-----사법
경찰관, 가정폭력행위자-----

-----.

-----.

② -----

때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생략)

제54조(종결된 사건 기록 등의
송부)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
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 ④ (생략)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
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
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
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
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
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

-----사법경찰관, 피해자

-. -----
-----.

③ (현행과 같음)

제54조(종결된 사건 기록 등의
송부) -----

-----검사 또는 경찰서 사법
경찰관에게-----
-.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
서장에게-----
-----있으
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후단 삭제>

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3. (생략)

⑥ (생략)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1. 2. (생략)

<신설>

② (생략)

<신설>

제6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 ~ 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치장 유치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과태료) -----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나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제9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으로서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제6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1. 2. (현행과 같음)

3.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제66조(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2항-----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문 등 출판물에 법률명 또는 사건명을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한 사람

2. 유사·관련 법률안의 심사 현황

□ 개정안의 내용을 주요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음.

구 분	개정사항	대상 조문
피해자 보호조치 실효성 제고	응급조치의 범위 확대: 가정폭력범죄의 '진행 중' 요건 삭제	안 §5
	(긴급)임시조치의 사유·내용 등 변경	안 §8① 등
	◦ (긴급)임시조치 사유 변경: 범죄의 '재범 우려' → '발생 우려'	안 §8① 등
	◦ 긴급임시조치 내용 변경: 유치장 유치 추가	안 §8-2①
	(긴급)임시조치 미이행 시 제재 강화	안 §63 등
	◦ 임시조치 미이행 시 법정형 상향	안 §63①3호
	◦ 긴급임시조치 미이행 시 형사처벌 부과	안 §63⑤
관계기관 간의 권한 조정	사법경찰관에 대한 고소권자 지정권 부여	안 §6
	사법경찰관에 대한 임시조치 청구권 부여	안 §8① 등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인정 및 보호사건 처리 허용	안 §7 등
	◦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안 §7
	◦ 사법경찰관의 가정보호사건 송치	안 §11
	보호명령사건에서 경찰서장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요청	안 55-2⑤
2차 피해 방지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사건명 등의 출판·방송 제한	안 §18 등
	◦ 사건명 등의 출판·방송 금지 의무	안 §18④
	◦ 사건명 등의 출판·방송 시 과태료 부과	안 §65 2호

□ 2025년 9월 현재 개정안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내용을 담은 법률안으로는 총 6건의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의안번호	대표발의	회부일	주요 내용
2200365	한병도	2024.06.13.	◦ 응급조치 범위 확대: 가정폭력범죄 '진행 중' 요건 삭제 ◦ 임시조치 미이행 시 법정형 상향 - 격리, 접근 금지 등 미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긴급임시조치 미이행 시 형사처벌 부과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2202212	이만희	2024.07.25.	◦ 긴급임시조치 내용 변경: 상담위탁 추가 ◦ 긴급임시조치 미이행 시 형사처벌 부과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2208197	정일영	2025.02.18.	◦ 임시조치 내용 변경: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추가 ◦ 보호처분 내용 변경: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추가
2210950	박희승	2025.06.20.	◦ 임시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의료기관·요양소 위탁 등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
2212410	양부남	2025.08.28.	◦ (긴급)임시조치 내용 변경: 전자장치 부착 추가
2212780	용혜인	2025.09.09.	◦ 제명 변경 -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 ◦ 가정보호사건 및 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 친밀관계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배제 ◦ 사법경찰관에 대한 임시조치 청구권 부여 ◦ 임시조치 내용 변경: 전자장치 부착 추가 등

□ 참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처벌법”)의 일부개정법률안(제2207639호,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이 본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며, 현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의안번호	대표발의	회부일	주요 내용
2207639	임호선	2025.01.21..	◦ (긴급)임시조치 사유를 범죄 '재발 우려'에서 '발생 우려'로 변경 ◦ 긴급임시조치의 내용에 유치장 유치 추가 ◦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부과 ◦ 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임시조치 청구권 부여 ◦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인정 및 아동보호사건 처리 허용 ◦ 피해아동을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사건명 등의 출판·방송 제한

3. 응급조치의 범위 확대 등

가. 검토의견

- 안 제5조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서 “진행 중인”을 삭제하여 응급조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조치 시 통보사항에서 그 의미가 불분명한 “폭력행위 재발 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법 제5조는 응급조치의 요건으로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엄격한 의미의 현재성이 있어야 응급조치가 가능한 것처럼 이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응급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됨.
- 가정폭력처벌법과 유사한 성격의 응급조치를 두고 있는 아동학대 처벌법과 비교하여 보면,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 아동학대범죄가 진행 중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음.¹⁾²⁾

1)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2) 다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응급조치의 요건으로 스토킹범죄가 진행 중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스토킹처벌법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 다만, 개정안과 같이 변경할 경우 응급조치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응급조치의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제1항의 문언을 참고하여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관계기관의 의견

- 법원행정처는, 가정폭력범죄가 “진행 중”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해당 사항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긴급)임시조치의 사유·내용 변경

□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조치에 해당하는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조치의 요건을 완화하고 그 강제력을 강화하려는 내용임.

○ 안 제8조제1항 등이 (긴급)임시조치의 사유인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를 ‘가정폭력범죄의 발생 우려’로 변경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안 제8조의2가 긴급임시조치의 유형으로 유치장 유치를 추가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조치의 강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내 용	대상 조문
(긴급)임시조치 사유를 범죄의 ‘재발 우려’에서 ‘발생 우려’로 변경	안 §8①, 안 §8-2①
긴급임시조치의 유형에 유치장 유치를 추가	안 §8-2①

가.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사유 변경

1) 검토의견

- 안 제8조제1항과 안 제8조의2제1항은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의 사유를 ‘가정폭력범죄의 발생 우려’로 변경하고 있는데, 피해자 보호 조치를 널리 인정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거나 과도한 권익 제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 현행법상 긴급임시조치는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나 긴급을 요하여 임시조치를 받을 수 없을 때 인정되므로(제8조의2제1항), 성격상 응급조치 이후의 조치임.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응급조치는 가정폭력범죄 현장 등에서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제5조제1항), ‘가정폭력범죄(라고 추정되는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동법상의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함(제2조제5호).³⁾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따라서 현행법 제8조의2제1항 등에서 말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란 사건 처리 절차 개시 이후 ‘가정폭력범죄의 발생 우려’와 같은 의미라고 할 것임.

- 임시조치 역시 가정폭력범죄사건 처리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실시되는 피해자 보호조치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같게 보아야 할 것임.

3)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한편, 안 제8조제1항을 가정폭력범죄(라고 추정되는 행위)의 발생 전에도 그 발생 우려만을 이유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이해한다면, 이는 구체적인 위험 없이도 친권 등 권한 행사의 제한, 유치장 유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대상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될 소지가 있음.

- 특히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로서의 유치장 유치는 총 2개월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제29조제5항),⁴⁾ 범죄 내지 그 의심 행위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범죄 수사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기간의 상한은 총 30일임(「형사소송법」 제202조 등).⁵⁾

4) 가정폭력처벌법은 임시조치 중 유치장 유치(제4호의 임시조치)의 기간 상한을 1개월로 규정하고,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임시조치)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의 의견

- 법원행정처는, ① 안 제8조의2제1항의 경우 현행법상 긴급임시조치의 요건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란 응급조치 이후의 ‘가정폭력범죄의 발생 우려’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고, ② 안 제8조제1항의 경우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장래의 위험성만을 이유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정폭력행위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안 제8조의2제1항과 안 제8조제1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나. 긴급임시조치의 유형으로 유치장 유치 추가

1) 검토의견

□ 안 제8조의2제1항은 긴급임시조치의 유형에 유치장 유치를 추가하고 있는데, 가정폭력행위자를 구금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제한인 만큼 적법절차 내지 영장주의 등과의 관계에 비추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유치장 유치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는 점에서는 체포·구속 등과 유사하므로, 현행법은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에만 유치장 유치를 인정한 것으로 보임.

2) 관계기관의 의견

□ 법원행정처는, 유치장 유치의 경우 체포·구속과 동일한 정도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여서 영장절차에 준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긴급)임시조치 미이행 시 제재 강화

가. 검토의견

□ 안 제63조는 격리나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여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가정폭력행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유사한 내용의 조치를 사건 처리 절차의 각 단계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그 위반에 대한 제재는 해당 조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

긴급임시조치의 경우 그 내용을 막론하고 모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나(제66조제2호),⁶⁾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은 조치의 내용에 따라 형벌, 과태료 또는 제재 없음 등으로 나뉨.

- 임시조치로서의 격리, 접근 금지 등에 위반하는 경우의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인 반면, 보호처분으로서의 접근 제한 등에 위반하는 경우의 형벌은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임.⁷⁾

6) 가정폭력처벌법

제6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가정폭력처벌법처럼 긴급조치적 성격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두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의 경우를 보면,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 긴급임시조치 위반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제63조제1항제4호),⁸⁾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긴급임시조치 위반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제20조제3항).⁹⁾
- 따라서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그 미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할 것인지는 긴급임시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 유사 법률과의 관계에서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2. (생략)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③ · ④ (생략)

8)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9) 스토킹처벌법

제20조(벌칙) ③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 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만, 긴급임시조치는 법원의 결정 없이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임시조치의 청구·결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취소되어야 하므로(제8조의3),¹⁰⁾ 임시조치의 청구나 결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긴급임시조치 미이행에 대하여는 제재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나. 관계기관의 의견

- 법원행정처는, 긴급임시조치의 경우 임시조치 청구·결정이 없으면 즉시 취소되어야 하므로 취소가능성이 있는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 유사한 피해자 보호체계를 갖춘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 긴급임시조치 위반을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0)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6. 사법경찰관에 대한 고소권자 지정권 부여

가. 검토의견

□ 안 제6조는 피해자를 위하여 고소할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이 없는 경우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도 고소권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 제6조에 따라 피해자,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검사가 지정한 사람은 피해자를 위하여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할 수 있음.¹¹⁾

종류(근거)	대상자	사유
고유 고소권자 (§6①)	피해자, 법정대리인	-
대리 고소권자 (§6②)	피해자의 친족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지정 고소권자 (§6③)	검사가 지정한 자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11)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지정 고소권자는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지정 고소권자를 누가 지정할 것인지도 범죄 수사의 신속성·효율성, 피해자 보호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형사소송법」 제228조는 친고죄에서 고소권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그 지정을 검사에게 맡기고 있으므로,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태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¹²⁾

나. 관계기관의 의견

□ 법원행정처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권자를 누가 지정할 것인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 필요성,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12) 형사소송법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7. 사법경찰관에 대한 임시조치 청구권 부여

가. 검토의견

□ 안 제8조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제4호 등은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 안 제8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도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됨.

현 행	개 정 안
○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 청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신청 요청 ↓ 사법경찰관 청구 신청* ↓ 검사 ↓ 임시조치 청구 법원 청구 요청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청구 신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 임시조치 청구 법원
*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청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	
○ 제8조의3에 따른 임시조치 청구	
사법경찰관: 긴급임시조치 ↓ 청구 신청 검사 ↓ 임시조치 청구 법원	사법경찰관: 긴급임시조치 ↓ 임시조치 청구 법원

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신청·요청이 없이도 직권으로 임시조치 청구 또는 그 신청 가능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면, 임시조치 절차가 (사법경찰관의 신청) -
검사의 청구 - 법원의 결정이라는 2~3단계 절차에서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청구 - 법원의 결정이라는 2단계의 절차로 간소화
되므로 신속한 임시조치 결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임시조치의 경우 의료기관·요양소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행위자의 기본권을 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성격의 조치로 헌법상 적법절차 내지 영장주의의 취지가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임시조치에는 퇴거 등 격리, 각종 접근 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로
할 수 있는 유형의 조치 외에도 의료기관·요양소 위탁, 유치장·
구치소 유치 등 긴급임시조치로는 할 수 없는 유형의 조치도 포함
됨(제29조제1항).¹³⁾

13)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나. 관계기관의 의견

- 법원행정처는, 임시조치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주거이전의 자유나 통신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으로 유치장 유치 등의 경우 체포·구속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영장절차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 긴급을 요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를 거치지 않고 사법경찰관 등이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8.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인정 및 보호사건 처리 허용

가. 검토의견

□ 안 제7조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여 가정폭력범죄사건에서도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려는 것임.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범죄사건의 송치와 관련하여,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사건을 불송치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적인 범죄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인정하고 있음.¹⁴⁾

1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규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제2호의 ‘그 밖의 경우’에는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혐의 없음’뿐만 아니라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의 불기소사유가 포함됨(수사준칙규정 제51조제1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수사준칙규정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법원송치
2. 검찰송치
3. 불송치
 - 가. 혐의없음
 - 1) 범죄인정안됨
 - 2) 증거불충분
 - 나. 죄가안됨
 - 다. 공소권없음
- 라. 각하
4. 수사중지
 - 가. 피의자중지
 - 나. 참고인중지
5. 이송

○ 안 제7조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송치 대상 사건의 범위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와 같은 태도로 보임.

□ 가정폭력처벌법에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도입하여 형사사법절차 전반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판단됨.

다만, 가정폭력범죄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인정할 것인지는 수사의 신속성·효율성, 피해자 등의 보호가능성 및 가정폭력처벌법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임.

○ 일반적인 형사처벌 절차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보호사건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처분의 대상에는 공소권흡결 등의 불기소사유가 있는 자, 기소 가능한 혐의자가 모두 포함되므로,¹⁵⁾ 이러한 가정폭력처벌법의 특수성도 사건 송치 범위 결정에 고려되어야 함.

15)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 개정안에서 보호사건 처리에 관한 부분은 안 제9조 이하의 내용으로,
안 제9조 이하는 사법경찰관이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의 동기·성질 및 결과, 가정
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안 제9조),

사법경찰관이 특정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른 사건기록 송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안 제11조),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보호처분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46조).

○ 이러한 안 제9조 이하는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인정에
따라 보호사건 처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가정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보호처분은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므로(제40조제1항),¹⁶⁾ 가정폭력행위자의

16)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적법절차 내지 영장주의의 취지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¹⁷⁾

나. 관계기관의 의견

- 법원행정처는,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의 혐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가정폭력범죄의 혐의가 없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불송치한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 보호처분은 형벌은 아니지만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형사처벌 대신 부과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사적 제재에 해당하므로 보호사건 송치는 검사의 기소에 준하는 것으로서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17) 대법원은 보안처분의 일종인 사회봉사와 관련하여,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형벌과 같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소급효가 금지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2008. 7. 24.자 2008어4 결정 등.

9. 보호명령사건에서 경찰서장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요청

가. 검토의견

- 안 제55조의2제5항은 법원이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직접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55조의2제5항은 법원이 피해자 등의 청구를 받아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고, 검사는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일정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⁸⁾
- 현행법에 따르면, 신변안전조치의 결정부터 실시까지는 법원 - 검사 - 경찰서장이라는 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법원 - 경찰서장의 2단계로 단축하는 것이므로, 신변안전조치의 신속한 집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8)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다만, 신변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법원이 검사에게 신변안전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관계기관의 의견

- 법원행정처는, 신변보호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데, 다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른 법률도 사법절차 진행과정에서 법원의 신변안전조치 요청은 검사에게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가정 폭력처벌법상 검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권자에 포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임.

10.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건명 등 출판·방송 제한

가. 검토의견

- 안 제18조제4항은 피해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등을 연상할 수 있는 사건명 등을 출판·방송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안 제66조제2호는 위 금지에 반하여 출판·방송한 사람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은 이미 피해자 등의 2차적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서 출판·방송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제64조제2항에서 그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현행법과 개정안의 문언상의 차이를 고려할 때, 개정안은 출판·방송 금지 등 의무의 수범자 등을 확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현행법 제18조제2항 등과 안 제18조제4항 등의 문언을 비교하여 보면, 그 수범자와 내용 등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수범자와 관련하여 현행 제18조제2항 및 제64조제2항은 ①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②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③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안 제18조제4항 및 제66조제2호는 출판·방송 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특정하고 있지 않음.

- 의무의 내용에 있어서도 현행 제18조제2항 등은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의 출판·방송’을 금지하고 있으나, 안 제18조제4항 등은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가정폭력범죄 관련 법률명이나 사건명의 출판·방송’을 금지하고 있음.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도 현행 제64조제2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안 제66조제2호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현 행 법	개 정 안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② 이 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④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가정폭력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가정폭력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제64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② 제18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문 등 출판물에 법률명 또는 사건명을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한 사람

- 다만, 안 제18조제4항 등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서 말하는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의 범위나 동 규정상 출판·방송 등의 의미가 현행법과의 관계에서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나. 관계기관의 의견

- 법원행정처는, 안 제35조제4항에 사용된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라는 표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점, 피해자 등의 주소·성명·나이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 제18조제2항 등의 규정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1